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7. 24.] [문화재청고시 제2023-94호, 2023. 7. 24., 일부개정]

문화재청(발굴제도과), 042-481-49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견문화재'란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말한다.
2. '발굴문화재'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말한다.
3.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 등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이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라 한다)'란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 중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재 선별회의를 거쳐 선정된 문화재를 말한다.
5. '국가귀속문화재'란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중 문화재청장이 국가귀속을 결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6. '임시보관'이란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또는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의 보관·관리기관에 인계하기까지 보관·관리함을 말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의 공고 및 소유권 판정

제3조(매장문화재조사의 완료 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조사기관 의견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 ②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고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결과서 제출 시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 ②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 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문화재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④ 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귀속 대상 및 절차

제6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① 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기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채집된 유물 중 원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선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별회의에서 선정된 발굴문화재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③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시행령 제4조제2항의 매장문화재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 귀속 신고 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④ 조사기관은 선별회의의 결과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 또는 매물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따로 보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기관

에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문화재는 기록 유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몰 처리하여야 한다.

1. 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문화재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되,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인근지 등 적합지로 한다. 매몰장소가 당해유적지 또는 인근지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를 기록한 표지석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3. 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⑥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

1. 재평가는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⑦ 제3항과 제6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4.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법 15조에 따라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고,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 ① 조사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금속류, 목축초철류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 그 밖에 국가귀속문화재의 임시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국가귀속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조사기관과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제10조(비귀속 대상 문화재) ①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관·관리·활용·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매몰자료로 결정한 문화재 이외의 유물(이하 "학술 문화재"라 한다)에 대하여 보관·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③ 조사기관은 학술 문화재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선별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매몰자료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53호,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사기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향후 시스템 보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입력·등록한다.

부칙 <제2011-78호,2011.4.6.>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6호,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및 제7조(국가귀속 절차)는 이 규정 시행 이후 발굴허가 한 유적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5항과 제7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굴허가 한 유적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4-143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2호,2015.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7호,2015.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7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4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51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4호,2023.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제5조 제2항 관련)

문화재 전문가 · 법률전문가 · 이해관계자 ·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

구 분	항 목	자격 및 기준
문화재 전문가	고고학	고고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미술사학	미술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역사학	역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위 분야 및 당해 유물 관련 분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해당 유물 혹은 유적에 조예가 있는 자
법률 전문가	법률학	1.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 2. 대학(대학원)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3. 정부법무공단(소속 변호사 포함)
이해 관계자		1. 당해 발견 문화재 및 발굴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신청자, 점유자, 관리자 2. 당해 발견 및 발굴 문화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단체 혹은 위임받은 자 포함)
관계기관		1. 당해 발굴 문화재를 발굴조사 한 조사기관 2. 당해 발견 또는 발굴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기관(박물관 등)

※ 소유권 판정 대상 유물(유적)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문화재/법률) 인원 선정

[별표2](제5조 제2항 관련)

문화재 전문가·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방법

구 분	의견 청취 방법
전문가 (문화재/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서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1]에 따른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 ○ 필요시 관계 전문가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시 발언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으로 간주한다.
이해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는 서면방식으로 하며, 소유권 판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관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서면(공문)으로 한다.

<붙임1> (문화재/법률) 전문가 의견서					
성 명	(인)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 소					
의견서 요지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세부 의견서 1부. 문화재청장 귀하					

※ 검토 사항

1. 문화재 분야 : 유물과 유적의 역사적 성격(유물의 제작·사용 시기), 출토지역과의 관련성, 유적의 전승관계, 유물 출토 층위 및 외부 유입 여부 등
2. 법률 분야 : 해당 분야 판례(판결례), 유물(유적)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적 검토 등

※ 준수 사항

1. 전문가는 관련기록을 충분히 검토 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의견을 개진하여야 함
2. 전문가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나 의견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함

[별지 제1호 서식]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 량	비 고
1. 금속		00점	
2. 옥석유리		00점	
3. 토도		00점 (00 박스)	
4. 골각		00점	
5. 목죽초칠		00점	
6. 기타		00점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	--	--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별지 제2호 서식]

제 0000 - 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00광역시(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0000 등 00건 00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허가 제0000-0000 / 0000 유적

다. 조사지역

00광역시(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라. 조사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마. 조사기관

(재) 00문화재연구원

바. 보 관 처

(재) 00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0000년 0월 0일

0 0 광 역 시 장(지사)

[별지 제3호 서식]

선별회의 결과서

허가번호	제0000-0000호		
유 적 명	0000000부지 내 유적		
조사장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번지(일원)		
조사기간	0000.00.00 ~ 0000.00.00		
출토유물	00000000등 000건 0000점 00상자		
선 별 회 의			
일 시			
평 가 자	소 속	성 명	전 공
	0000대학교	000	고고학(신라고분)
결 과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000건 0000점	
	학술 문화재(비수탁)	000건 0000점 00상자	
	매몰자료(비수탁)	000건 0000점 00상자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 조제2항에 따라 선별회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첨부서류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2. 비귀속 대상 문화재현황			

※ 출토유물 수량은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첨부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허가번호	제0000-0000호		
유적명	0000000부지 내 유적		
조사기관	000000연구원		
출토유물	00000000등 000건 0000점 00상자		
회의일시	0000년 00월 00일		
평 가 의 견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학술 문화재 (비수록)			
매몰자료 (비수록)			
평 가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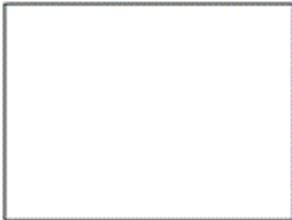
※ 평가기준

1.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학술 문화재(비 수록 유물) :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3. 매몰자료(비 수록 유물) :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자료
- ※ 출토유물 수량은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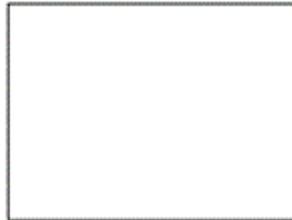
[첨부 2]

비귀속 대상 문화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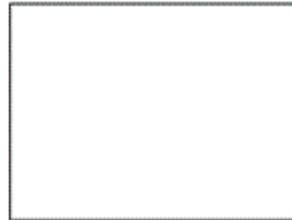
학술 문화재	
유물수량	000건 0000점 00상자
보관장소	
유물사진	별도첨부
매몰자료	
유물수량	000건 0000점 00상자
보관장소 ¹⁾	
유물사진	별도첨부

학술 문화재 사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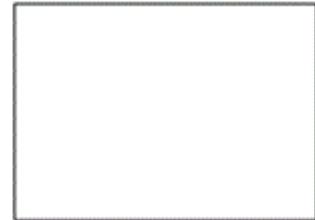
유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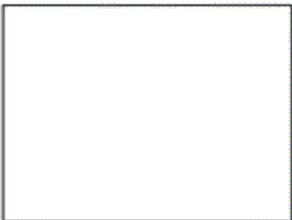
유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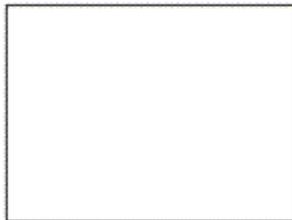
유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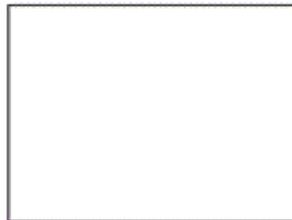
유물 4

매몰자료 사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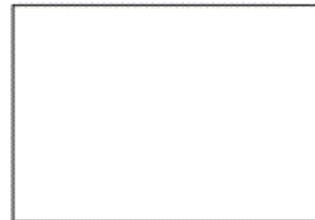
유물 5



유물 6



유물 7



유물 8

1) 매몰장소(매몰 이전일 경우 현 보관장소) 기재

2) 상자 단위 사진의 경우 유물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 직상방에서 촬영

3) 상자 단위 사진의 경우 직상방에서 촬영

[별지 제5호 서식]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선별결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별지 제7호 서식]

20〇〇년도 비귀속 대상 문화재 보관·관리·활용·처분계획 (기관명)

1. 비귀속 대상 문화재 현황 (단위: 점, 상자)

구분	학술 문화재	매물 자료	합계
〇〇〇유적			
〇〇〇유적			
〇〇〇유적			
...			
...			
합계			

2. 학술 문화재 보관·관리·활용계획 (단위: 점, 상자)

구분	유물점수	세부계획	비고
보관·관리계획	00,0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수장고 보관 - 보관유물 : 토도류 0,000점, 철기류 0,000점, 옥석유리류 0,000점, 목죽초칠 0,000점 - 보관위치 : 1번~10번 수납장 	
활용계획	00,0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활용 : 0,000점 - '전시명'('17.0.0.~0.0. 〇〇〇 문화재연구원 전시실) ○ 문화행사 등 활용 : 0,000점 - '문화행사명'('17.0.0.~0.0. 〇〇 〇박물관 〇〇전시실) 	
합계	00,000점		

3. 매물 자료 처분계획 (단위: 점, 상자)

구분	선별회의 개최일	매물대상 자료 점수	매물현황 (매물장소)	추가 매물계획
〇〇〇유적	'17.00.00.		00점 (발굴유적지 내)	○
〇〇〇유적	'17.00.00.		00점 (발굴유적지 내)	○
〇〇〇유적	'17.00.00.		00점 (발굴유적지 내)	○
...				
...				
합계			00점	